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 시행요령

1. 목적

이 요령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과 아울러 유신이념에 입각한 올바른 정신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각 관서별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엄숙히 거행하도록 그 거행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가. 이 요령에 의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의 적용범위는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단체포함)으로 하되, 각 기관은 민간기업체 및 단체 등에도 이 요령에 의한 국기게양 및 강하식이 파급 실시되도록 유도한다.

나. 기관의 업무 특수성에 의하여 이 요령을 적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를 통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사전 통보한다.

다. 군부대, 특수경찰부대 및 각급 학교는 각기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외공관은 주제국의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3. 게양식 및 강하식 거행

가. 거행일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각 관서(단체)별로 매일 거행하되, 그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양식

(가) 하절기 (4. 1 - 10. 31) : 06:00

(나) 동절기 (11. 1 - 3. 31) : 07:00

(2) 강하식

(가) 하절기 (4. 1 - 10. 31) : 18:00

(나) 동절기 (11. 1 - 3. 31) : 17:00

나. 거행 절차 및 방법

(1) 게양식

관서별로 지정된 기수요원으로서 정복착모요원(3-5)만이 자체 구령에 의하여 거행한다. 다만, 교육기관 등 특별히 게양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로 자체계획에 의하여 거행한다.

(2) 강하식

(가) 참가범위

관서내에 수용된 전원과 주변 옥외 인원으로서 국기를 목격할 수 있거나 구령 또는 주악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원은 전원 참가한다. 다만, 특수 업무 (회의, 특수 집무, 특수작업등) 진행상 불가피하여 그러하지 못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경의 표시

전항의 참가인원은 국기의 강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ㄱ) 옥외의 제복착모자는 국기에 주목하여 거수 경례를 하며 평복으로 참가하는 자는 기립 차려 자세로서 국기를 향하고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 심장부에 대고 경의를 표한다.

(ㄴ) 옥내에서 제복 또는 평복으로 참가하는 자는 국기 방향을 향하여 기립 차려 자세만을 취하여 경의를 표한다.

(ㄷ) 관서경내에 진입한 차량은 정차하는 동시에 소형승용차의 탑승자는 하차하여 경의를 표하고 단체로 대형차에 탑승한자는 승차한채로 앉은 차려 자세를 취하여 경의를 표한다.

(ㄹ) 주변의 대중 교통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정차로 인하여 교통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은 평시운행을 유지하면서 경의만을 표하고 기타 차량은 정차하여 전항에 준한 방법으로 경의를 표한다.

(다) 주악 및 구령

(ㄱ) 강하식의 주악은 애국가 곡1회로 하되 녹음 및 방송 시설로 참가인원이 청취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기의 강하와 주악시간이 일치되도록 한다.

(ㄴ) 녹음 방송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서별로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정하거나 구령에 의한다.

4. 일기 변동시와 공휴일 및 토요일의 게양, 강하

(가) 국기는 비나 눈이 내릴 때에는 게양하지 아니하며 일기변동(우천 후 청명)으로 인하여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할 때와 공휴일 및 토요일의 강하식은 지정된 기수요원만이 시행한다.

5. 타 의식과의 관계

일정한 행사나 조례 등 타 의식과 중복될 경우에는 계획된 의식절차에 의한다.

6. 기타

1개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된 경우에는 이를 주관 운영하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타 기관은 이에 참여한다.

7. 시행일

이 요령은 1976. 11. 1부터 시행한다.